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5. 26 선고 2019가단3240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엄두원,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76,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38,3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2018. 8. 7. 원고로부터 92,91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9. 3. 25.부터 원금상환채무 이행을 지체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은 2019. 12. 12. ‘C는 원고에게 94,779,496원 및 그중 85,166,529원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19차4217)을 발령하였다.

나. 피고와 C의 혼인관계 등

1) 피고와 C는 1986. 11. 11. 혼인신고를 마쳤다.

2) C는 1985. 6. 12.부터 2018. 11. 15.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였다.

3) C는 2018. 11. 1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D엄마

너무나 미안하다.

너랑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할 말이 없다.

30년 살면서 너무나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아이들 보기도 너무 미안해.

아빠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생 너무 헛 살아 왔네.

회사는 정리했고 퇴직금은 12. 15.경 나온다네.

너무나 미안하다. 나 같은 것은 잊고 울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

나도 이제는 어디가든지 열심히 살게.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 올 거야.

다시 한 번 더욱 더 미안하다.

30년 동안 속만 시키고 할 말이 없네.

울지 말고 밥 잘 먹고 열심히 살아.

차는 우선 내가 가지고 갈게.

앞으로 남은 인생 잘살아 가도록 할게.

※ D엄마는 강하니까 잘 헤쳐 나가리라 믿는다. 연락할게.

4) C는 2018. 12. 15.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5) 피고와 C는 2019. 4. 23.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1) C는 1997. 4.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7.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는 2019.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C가 피고에게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증여합니다”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19. 4. 15.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4. 15.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E조합은 2019. 6. 27. 피고로부터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조합’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5) 피고는 2019. 6. 28. 이 사건 아파트에 2008. 8. 20.부터 2019. 7. 2.까지 주민등록을 두었던 F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6) 피고는 2019. 5. 1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C는 안동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7)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2019. 4. 15. 기준으로 77,500,000원, 2020. 10. 8. 기준으로

76,600,000원이고, C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며, 소극재산은 금융기관 등에 149,999,496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 4, 6, 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H기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관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관련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와 C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가액의 1/2 부분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므로,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가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단순한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피고와 C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이라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① 피고와 C는 1986. 11. 11.부터 2019. 4. 23.까지 약 33년간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였다.
- ② 혼인기간 중 C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역시 점원 등의 직업을 가지면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 ③ C가 가정을 소홀히 하는 등 가정불화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피고와 C는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직후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 ④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C는 안동시에서 각 거주하고 있다.
- 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을 기준으로 77,500,000원이었는데, 피고가 F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하여 실제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42,500,000원 상당이다.

⑥ C는 2018. 12. 15.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여 자신이 모두 사용하였는데, C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약 33년간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와 C가 이혼을 할 당시 피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규

별지

별지

(1동의 건물의 표시)

영주시 I

[도로명주소] 영주시 J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361.59㎡

2층 361.59㎡

3층 361.59㎡

4층 361.59㎡

5층 281.4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영주시 I 대 137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K호 철근콘크리트조 84.2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374분의 73.03. 끝.

